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098

발의연월일: 2022. 4. 5 .

발 의 자: 박성민·김용판·이종배

정우택 • 구자근 • 송석준

정동만 · 조명희 · 하영제

金炳旭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·진보성 등이 있고 이를 국가교통체계에 보급·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불과 99건의 교통신기술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타 기술인증에 비해 신청이 저조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교통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경우 해당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, 발주청 소속 담당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해당 기술 적용으 로 인한 손실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교통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 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발주청은 교통신기술이 기존 교통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경우 해당 교통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 (안 제102조제4항 신설).
- 나.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 및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교통신기술 적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 (안 제102조제5항 신설).
- 다. 교통신기술 기술개발자가 건설사업자와 신기술의 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(안 제102조의2제1항 신설).
- 라.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(안 제119조제3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2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(이하 "발주청"이라 한다)은 교통신기술이 기존의 교통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통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.
- ⑤ 교통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당 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해당 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2조의2(교통신기술사용협약) ① 기술개발자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협약(이하 "교통신기술사용협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술개발자 또는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

통부장관에게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 지 확인한 후에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한다.
- ③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의 기간은 해당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한다.
-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
- ⑤ 그 밖에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1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			
제102조(교통신기술의	지정・보	제102조(교통신기술의 지정・보				
호 등) ① ~ ③ (생	략)	호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			
<u><신 설></u>		④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조				
		제6호에 따른 발주청(이하"발				
		주청"이라 한다)은 교통신기술				
		이 기존의 교통기술에 비하여				
		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				
		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			
		해당 교통신기술을 그가 시행				
		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				
		<u> 여야 한다.</u>				
<u><신 설></u>		⑤ 교통신기술을 적용하는 건				
		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				
		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				
		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				
		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당				
		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해당 기				
		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				
		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				
<u>④</u> (생 략)		<u>⑥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				
<u><신 설></u>		제102조의2(교통신기술사용협약)				
		① 기술개발자는 「건설산업기				
		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건				

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협약(이하 "교통신기술사용협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할 수 있다. 이 경우기술개발자 또는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대통령 경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후 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요 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에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 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- ③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의 기간 은 해당 교통신기술의 보호기 간 이내로 한다.
-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신 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 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제11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19조(벌칙) ------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 1. • 2. (생략)

<신 설>

<u>(5)</u>	ユ	밖이] 11/	1통신	기술	:사용	- 협
약이	레 된	반한	세부	적인	사	항은	대
<u>통</u>	성정	으로	정	하는	기 (준에	따
라	국	토교	통부	장관	(٥	정히	- 여
고시	시한	<u>다.</u>					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102조의2제1항 후단 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